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12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08.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4.09]

cheesedang0522@naver.com

치즈당

정 보 공 개 서

[치즈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치즈당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7-21]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1533-148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 1533-1483]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 할 품목

[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법인설립 등기일	주소			
디벨로 맥스	치즈당	개인 사업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7-21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5.22	조용윤	1533-1483	-
				사업자등록번호	372-50-0093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조용윤	치즈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7-2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용윤	1533-1483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해당없음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

※ 당사는 가맹본부 외 에 다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특수관계인(사)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치즈당]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치즈당	
상 호	치즈당 OO점	
상표(서비스표)		치즈당 40-2187-8920000 (2024.04.26) 등록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245,576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치즈당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 상기 1) 과 동일하기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사업 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조용윤	대표	2023.5.22~현재	대표	회사 운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는 상기 내용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치즈당 (Cheesedang)	상표권 43류	등록 2024.04.26	40-2187-8920000	조용윤	2034.04.26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현재 출원중이기에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 (1)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위 상표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 및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권리
- (2)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위 상표를 이용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3)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
을 사용할 권리
- (4) 기타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상표의 사용권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치즈당]를 시작한 날짜 : 2023. 8. 30

직영점 개시일 : 2020. 9. 14

2. [치즈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디벨로맥스	치즈당	조용윤	2023.08.30. ~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7-21

3. [치즈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치즈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음식점업	디저트카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치즈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2	1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치즈당] 가맹점의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1	-	-	-	1

6. [치즈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치즈당]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치즈당]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해당없음	-	-	-	-	-	6개월 미만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1	해당없음	-	-	-	-	-	5개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8. [치즈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치즈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3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치즈당]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중 한 곳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1599-9999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 한 다음 『치즈당』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예치 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금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 대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가맹금은 「디벨로맥스」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디벨로맥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 조치 등

당사 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의 시정 조치 등 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 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 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 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치즈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며,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각종 인허가 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 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시	해지 시	- 개점 전 인도된 상품 및 제공된 서비스(인력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개점 후 개점에 필요한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계약 및 이행 기간, 계약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반환	
교육비	3,300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이후에는 반환 불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일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용역 등 에 대한 미지급 등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단위:천원/부가세포함)
합계	10,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현금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33㎡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8,000		-		
인테리어	(비공개)	18,000	1,800	계약 체결시	시공 전 계약취소	
간판/사인물	(비공개)	3,000	300	계약 체결시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집기/용품	(비공개)	27,000	2,700	계약 체결시	설치(입고) 전 계약취소	
POS 설치	(비공개)	-	1	계약 체결시	설치 전 계약 취소	월-27천원
운영물품 (유니폼 등)	-	-	-	계약 체결시	실시 전 계약 취소	

※ 상기 금액은 영업점 규모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맹점과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공사 관련하여 당사의 지원 및 관리의 대가로 당사가 정한 기획관리비 (3.3㎡(1평) 당 ₩198,000원-부가세포함)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백화점, 마트 등 특수매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는 점포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개시가 지연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 후견인’ 이 아닐 것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 할 수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치즈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 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반환 불가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후불로 지급하는 금전 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소멸성)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1)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5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2)	업체명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완공 후 30일 이내	시공 전 계약 취소	관련 페이지 참조 (가맹본사 경유 업체 지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에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로열티		가맹점 총 매출액의 2%	가맹점 영업 개시 후 3영업일 이내	가맹본부 귀책 사유로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 외 사유로 계약 해지 시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사업의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가맹본부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전국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국광고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 가맹본부가 전국규모의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가맹점이 지역단위(시, 도, 군, 구)로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광고 비용의 부담은 광고 지역 내의 점포 수에 따라 지역내의 가맹점사업자들이 나누어 분담합니다.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 부담의 배분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 판촉활동비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할인판매, 경품 제공, 시식회,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내용 및 방법, 시행시기, 소요 비용 및 당해 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획.주관하는 판촉행사와 가맹본부가 배포한 상품교환권, 무료시식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사용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치즈당』의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자인비 및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3년 기준)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의 최초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신규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기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치즈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신규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비(영업표지 사용, 운영메뉴얼 제공 및 유지 관리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금의 규모와 내역은 기존 신규 가맹점과 동일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 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채권채무 상계 시 관련 부담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외 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기 철거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 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치즈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 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 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상 물품 사용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 가맹본부와 브랜드의 명성 유지,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정한 품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사는 운영 방침 및 매뉴얼 준수와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가맹계약 갱신(재계약)의 거절, 계약의 해지 등 조치를 행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치즈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치즈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치즈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각종 카스테라, 쿠키류, 디저트, 음료 등 치즈당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판매가 허용된 메뉴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 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 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오리지널 카스테라	9,000	서면 통보 등	
치즈 카스테라	11,000		
초코칩 카스테라	11,000		
크림 카스테라	11,000		
초코칩 크림 카스테라	13,000		
우유크림 추가	2,000		
맛크림 추가	2,300		
플레인 르벡쿠키	3,000		
녹차 르벡쿠키	3,200		
오레오 르벡쿠키	3,200		
황치즈 르벡쿠키	3,200		
레드벨벳 르벡쿠키	3,200		
아메리카노 ice 330ml	2,900		
아메리카노 ice 500ml	3,900		
아메리카노 hot 330ml	2,900		
카페라떼 ice 500ml	4,500		
바닐라라떼 ice 500ml	4,500		

자몽 에이드 500ml	4,500		
레몬 에이드 500ml	4,500		
청포도 에이드 500ml	4,500		
패션후르츠 에이드 500ml	4,500		

상기 외 취급 메뉴에 대해서는 개점 전 에 별도 제공하며, 귀하가 위 표를 포함한 모든 메뉴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개정법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카스테라 등 치즈당 주력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영업표지	계열회사
	치즈당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계약서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공해 드린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치즈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치즈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영업지역 설정과 운영 관련하여 당사는 상기 기준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총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가맹점 매출액이 있으나 산정이 어려워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산출 불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 계약 및 갱신 기간

[치즈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 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2항의2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8조제2항의3-가 목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8조제2항의3-나 목
[치즈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2항의3-다 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단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8조제2항의3-라 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0조제1항의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30조제1항의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30조제1항의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30조제1항의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5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30조제1항의6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30조제1항의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치즈당』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0

가맹점 평가표의 평가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제30조제1항의11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3개월간 3회 이상 위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3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4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대금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인수받은 상품 및 기타 물품 등 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고객 판매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7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자점 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3일 이상 점포 운영을 중단 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19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0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1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매출에 관련된 통지나 보고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 이전, 명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제30조제1항의24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5
을"이 "갑"이 시행하는 "점포방문평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상품 공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의26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

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제2항의1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9조제2항의2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제2항의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 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 나. 위법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제2항의4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제39조제2항의5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제2항의6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제2항의7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제2항의8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제2항의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수정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수정	제48조제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도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하기 15일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양수인·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사업팀 (1533-1483)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협의 후 승인)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 시 가맹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음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신규 가맹점 사업자의 개점 전 교육 비용과 동일)
대리 행사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 원칙적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 운영이 불가하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와 의무	요구하는 관련 증빙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운영을 인정함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내에서 귀하가 [치즈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카스테라 등 『치즈당』에서 판매하는 업종 및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사업팀 (1533-1483)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치즈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고
11:00 ~ 22:00(일 11H 이상)	주 6일 이상	문의:가맹사업팀 (1533-1483)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합니다.

가맹점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33㎡ 기준)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치즈당]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성격	부담 비율		분담절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분기를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해당 분기의 전달 말일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 광고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전국적 이벤트 행사
	제품광고	50%	50%		
	가맹점모집	100%	-		
	지역단위 광고, 개별광고	-	100%	당사 승인 후 진행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매출활성화	50%	50%	당사 승인 후 진행	할인서비스 등 의 종료시 까지
기타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당사 승인 후 진행	판촉행사 동의 절차 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승인하에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 문구)

단 이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개별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별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치즈당』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디자인 및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참조)

1. “을”의 일방적 사유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을”이 제39조제2항(즉시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또는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현저하게 “갑”의 매출액의 감소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 위반 등 으로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갑”의 명성이나 신용, 매출 등에 뚜렷한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세한 사항은 기 제공된 가맹계약서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당사가 배상합니다.

가맹본부는 상기 사유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합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와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33㎡ 기준)

구 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48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45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 10,800천원 (관련페이지 참조)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인테리어 : 18,000 * 간판,사인물: 3,000 * 주방용품 및 기타 집기류 : 27,000
점포 실측 / 설계	- 투자비 산출	D-26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D-22~3(20일)	개점 전 교육비:3,300 (상기 가맹금에 기포함)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 가능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의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 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 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모두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가맹 사업팀 (1533-1483)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관 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모두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치즈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치즈당]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고려 중이며 향후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치즈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치즈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 (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3,300(부가세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필수
보수 교육	1일 (교육 내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추후 공지*	점포 평가 반영

* 보수 교육 비용의 경우, 교육 내용과 방식, 참가 인원 등 에 따라 변동되며, 교육 공지 시 안내 예정입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을”은 “갑”이 정하는 신규 또는 보수 교육을 가맹계약서 14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특별시	치즈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5-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단위 : 년,개월)

2023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0개월	최초 개업일 : 2020.9.14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도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비고
245,57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관리팀(1533-14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f@ftc.go.kr)**로 문의하시고 단,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cheesedang0522@naver.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 할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인근 가맹점 현황

☞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맹점 예비창업자의 개점 예상 지역을 근거로 별도 제공함.

_____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 일시	2024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 장소		
수령 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24년 월 일

가맹본부 치즈당 (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2024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 또는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인)

절 취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2024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 또는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